

## 「2025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(2차)」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
이상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‘2025 이상수온 대응 지원(2차)’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1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### 1. 사업대상자

-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육상해수양식 및 수산종자생산을 경영하는 자로서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이행한 어업인 및 어업법인

### 2.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

사업명	사업예산	사업추진 기간	접수·문의처
이상수온 대응 추가 지원사업	597,250천원 (보조 477,800, 자부담 119,450)	보조금 교부결정일 ~ 2025년 12월 31일까지	수산정책과 (710-3237)

- (지원형태) : 민간경상사업보조
- (집행주체) : 제주어류양식수협
- (지원율) : 보조금 80%, 자기부담금 20%
- (지원한도) : (고수온 특약가입 양식장) 면역증강제 지원: 개소당 2,800천원 이내  
(그 외) 면역증강제 또는 액화산소 중 선택 지원: 개소당 1,600천원 이내  
**\*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**
  - \* 「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」에 따라 “양어장용 액화산소”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조금에서 부가가치세 사전 공제 후 자부담에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함
- (지원내용) :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화산소 및 면역증강제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
(면역증강제) 7. 1부터 9. 30.까지(또는 고수온 종료일까지) 구입분 지원  
(액화산소) 기존 사업대상자는 기 교부된 보조금 전액 사용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
신규 사업대상자는 7. 1부터 9. 30.까지(또는 고수온 종료일까지) 구입분 지원
- (사업기간) : 보조금 교부결정일 ~ 2025년 12월 31일까지

### 3. 지원 제외

- 「해양수산물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
-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
-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
-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
-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자가(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,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, 피고용인 포함)가 보험사기(미수 포함)에 관련된 경우
- 기존 ‘2025년도 이상수온 대응지원’ 사업대상자 중 보조금 전액 미사용자(8.31.기준)

#### ※ 해양수산물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2.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
### 4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5. 9. 11.(목) ~ 2025. 9. 18.(목) (8일간)
-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제주시 문연로 30, 2청사 2층)
- 신청방법 :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제출 (접수 마감일 17:00 도착 분까지 유효)
- ※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(www.jeju.go.kr) 입법·고시·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
- 신청서류

-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(서식 1) 1부
- ② 사업계획서(서식 2) 1부
- ③ 견적서 1부(2백만원 이상인 경우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 필요)
  - \* 액화산소의 경우,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(공급가액, 부가가치세 표시)
- ④ 양식어업면허증 또는 허가증, 어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
-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⑥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(서식 3) 1부 \*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기재
- ⑦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(서식 4) 1부

#### ※ 위 구비서류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

- 문의처 :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담당자 ☎(064)710-323

## 5. 사업자 선정 및 통보

- 사업자 선정기준(자체심사)
  - 지원 자격요건 검토 및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
- 통보방법: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개별통보

## 6. 추진일정

- 사업신청 접수 : 2025. 9. 11. ~ 9. 18.
- 사업대상자 선정 : 2025. 9월 중순 이후
-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(제주어류양식수협) : 2025. 9월~
- 사업 완료 및 정산 : 2025. 10~12월



[서식 2]

# 사업계획서

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(2차)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
경비총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(보조율            %)

보조금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
자부담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
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 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고

보조사업의 효과

- 
-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※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편성목	통계목		
이상수은 대응 지원사업(2차)	재료비	재료비		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(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)

나. 자부담 집행계획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편성목	통계목		
이상수은 대응 지원사업(2차)	재료비	재료비		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(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)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 : 재료비
- ③ 금 액 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 - 세목 기재방법 : 단가(원)×회(명, 부 등) = ○ ○ ○ 천원



